

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
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
(기획경제국 재무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4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0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0. 7.

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,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금번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2필지, 건물 2동 매입건으로 토지·건물주와 협의 완료

(단위 : m²/ 천원)

소 재 지	구분	공부면적	취득면적	소유자	공 시 지 가 (개별주택가격)	매입가격
						2,790,076
독산1동 1121	토지	183	183	조○환	581,025	1,163,880
	건물	398. ²⁸	398. ²⁸		(304,000)	185,015
독산1동 1121-1	토지	183. ⁷	183. ⁷	김○관	583,247	1,168,332
	건물	504. ⁵	504. ⁵		(449,000)	272,849

나. 독산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매입

1)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인 독산1동 금하마을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차환경 및 마을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

2) 사업개요

- 위 치 : 독산1동 1121, 1121-1

- 면 적 : 366.7 m^2 (111평)

- 규 모 : 12면(지평식)

- 소요예산 : 3,320백만원(시비 1,788 / 구비 1,532)

▶ 부지매입비 2,790백만원, 설계·공사비 499백만원, 기타부대비 31백만원

4. 관계법령

가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

나.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

다.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

5. 검토의견

-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- 이 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토지 2필지, 건물 2개동이며 독산1동 금하마을 소규모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지 토지·건물 매입 건임.

- 해당지역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반경 300m내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어 주차난이 심각하고,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현장보고회 시 공영주차장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, 이 지역 내 소규모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에코에너지센터 활성화 및 금하마을 주민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1. 관계 법령 1부.

2. 위치도(사진) 1부.

3. 지평식 공영주차장 현황 1부. 끝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[시행 2022. 6. 29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<신설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 <신설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<개정 2015. 1. 20., 2021. 1. 12., 2021. 4. 20.>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
[제목개정 2021. 4. 20.]

[제10조에서 이동 <2021. 4. 20.>]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[시행 2022. 6. 29.] [대통령령 제32733호, 2022. 6. 28., 타법개정]

제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 <개정 2022. 4. 20.>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
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
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. <개정 2022. 4. 20.>

1. 사업목적 및 용도
2. 사업기간
3. 소요예산
4. 사업규모
5. 기준가격 명세
6. 계약방법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

[시행 2022. 8. 15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49호, 2022. 8. 15., 일부개정]

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,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13.12.31., 2015.10.8.>

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(변경계획을 포함한다)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. 다만,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3.12.31>

사업대상지 전경



독산동 1121, 1121-1



지도

행정동	주차장명	위치	면수	면적(m ²)	구조	비고
독산1동	독산1동 소규모 공영	독산동 1102-9	5	176	지평식	
독산2동	독산2동 소규모 공영	독산동 378-306	10	233	지평식	
	독산2동 소규모 공영	독산동 378-422	7	172	지평식	
	독산2동 소규모 공영	독산동 376-11	21	409	지평식	
	독산2동 공영	독산동 1040-58	50	1,216.3	지평식	
	독산2동 소규모 공영	독산동 1031-13	7	100	지평식	
독산3동	독산3동 공영(문성)	독산동 982-6	21	615.8	지평식	
	독산3동 소규모 공영	독산동 992-27	18	429.8	지평식	
	관악산근린공원	독산동 산89-7	12	350	지평식	
독산4동	독산4동 공영	독산동 197-6	18	537.2	지평식	
	독산4동 공영	독산동 938	12	1,017.6	지평식	
	독산4동 공영	독산동 375-3	16	505	지평식	
시흥1동	시흥1동 소규모 공영	시흥동 873-23	5	101	지평식	
	시흥1동 소규모 공영	시흥동 865-9	10	306	지평식	
시흥2동	시흥2동 공영	시흥동 243-12	55	1,598	지평식	
	시흥2동 주택가 공영	시흥동 228-36	3	96	지평식	
시흥4동	시흥4동 공영	시흥동 812-4	24	763.2	지평식	
	시흥4동	시흥동 808-4	7	194.6	지평식	
	시흥4동	시흥동 808-24	11	277.2	지평식	
	시흥4동	시흥동 808-16	6	116	지평식	
	시흥4동	시흥동 56-1	10	101	지평식	
	시흥4동 주택가 공영	시흥동 798-44	20	490	지평식	
	시흥4동	시흥동 173-11	5	195	지평식	
	시흥4동 소규모 공영	시흥동 815-38	7	194	지평식	
시흥5동	시흥5동 공영	시흥동 917-5	34	706.7	지평식	
	시흥5동 공영	시흥동 218-49	4	132	지평식	
	시흥5동 소규모 공영	시흥동 935-69	5	156.1	지평식	
	시흥5동 소규모 공영	시흥동 929-4	7	188.1	지평식	
	시흥5동 소규모 공영	시흥동 934-20	4	94.5	지평식	
	시흥5동 새뜰 공영	시흥동 211-3	21	538	지평식	
	시흥5동 시흥계곡	시흥동 412-5	31	1806	지평식	
	시흥5동 공영	시흥동 933-24	33	963.6	지평식	
	시흥5동 주택가 공영	시흥동 933-72	4	94	지평식	
	시흥5동 주택가 공영	시흥동 921-8	4	104	지평식	